

차례

제1장 총칙.....	1
제2장 학생생활.....	1
제3장 학생생활선도위원회.....	10
제4장 학생생활교육.....	11
제5장 학교폭력.....	15
제6장 현장실습.....	17
제7장 학생회.....	18
제8장 규정의 개정.....	20
별지1호.징계기준 및 벌점.....	23
별지2호.학교폭력발생 사안 처리 절차.....	25

2023 전북유니텍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정은 ‘전북유니텍고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1,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학생생활

제6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1.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3.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4.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5.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6.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8.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9.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10.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1.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3.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4.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6.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1.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0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1.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2.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3.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4.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5. 수업 중 급한 용무가 있을 때에는 교과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다녀온다.
6.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말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7.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8.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9.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10.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11.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1조(휴식시간)

1.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2.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3.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4.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5. 식생활관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6.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7.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8.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9.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2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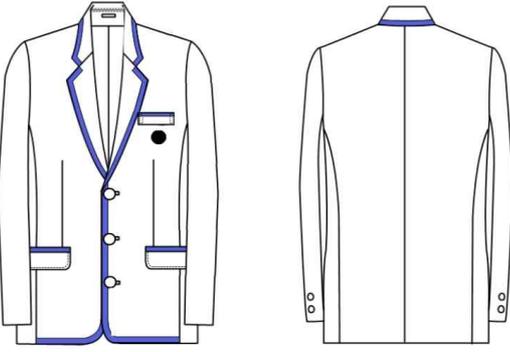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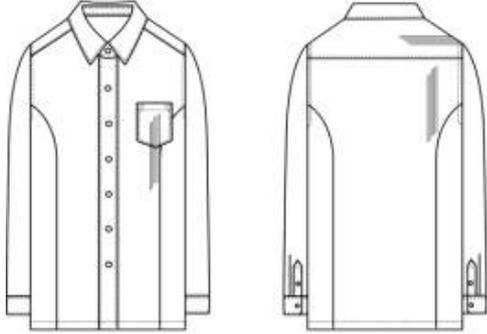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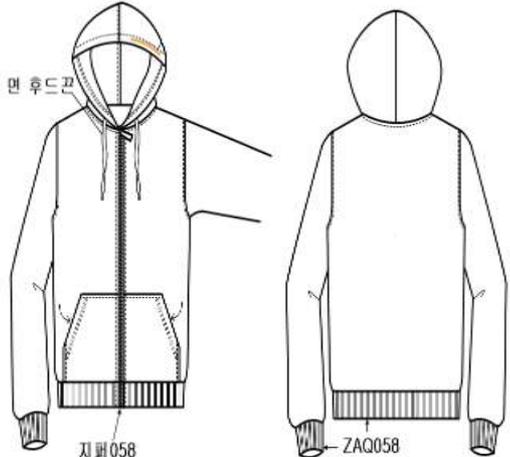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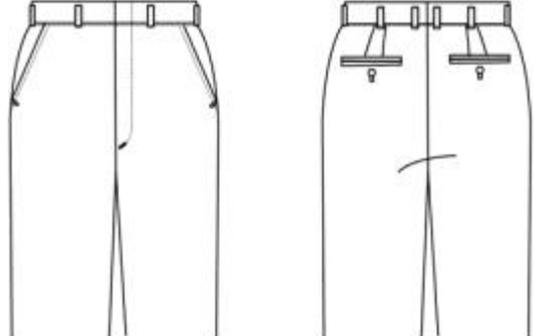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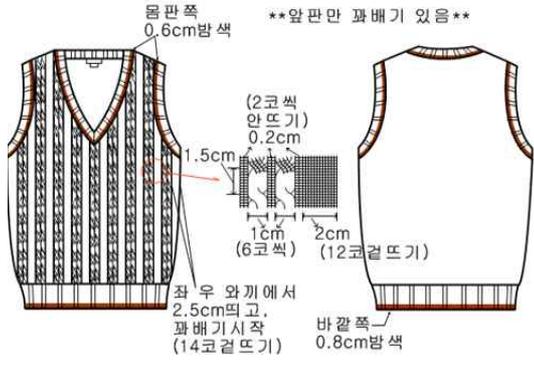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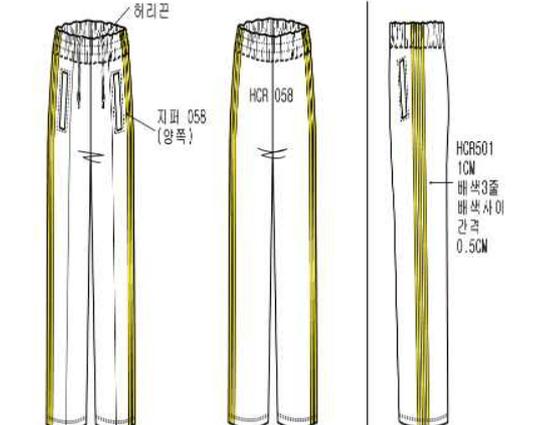
제13조(용모)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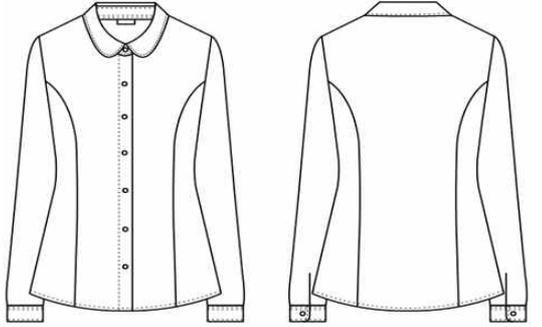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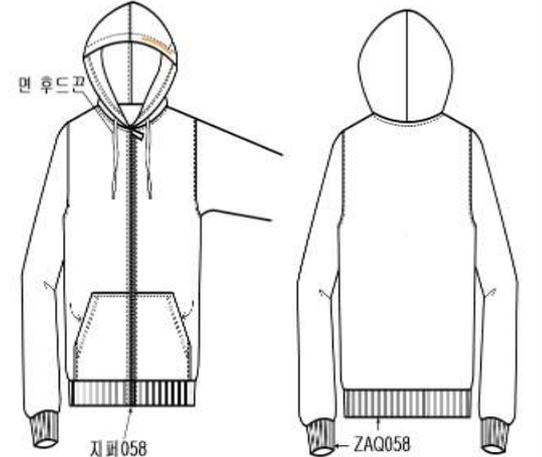
1. 복장은 학교에서 정한 지정복으로 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복장(혹서기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흡연, 복장위반: 교사와 학생자치부의 계속된 지도에 불응할 경우 학생자치법정과 생활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교복

복종	그림(전, 후면)	제원	특징(제작요령)
상의 (자켓)		<p>1.겉감 -진감색 캐시미어 -모:나일론=80:20 -베이지 배색</p> <p>2.안감 폴리 100%</p> <p>3.교표 미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추(검정단추) -앞단추 3개(지름 18mm) -소매단추 2개(지름 15mm) 가슴주머니 5cm 아래 교표 가슴주머니 위 베이지 배색 아래 주머니 뚜껑 있음 길이는 허리선 아래 5cm 이상 겹치도록 할것 소매시접 4cm 이상 겉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야함 여분단추 1개 이상 필수
셔츠		<p>1.원단 색상: 흰색</p> <p>2.혼용율 폴리 70% 레이온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추 - 앞단추 : 백색 7개(12mm) - 소매단추 : 백색 2개(12mm) 폼 - 여유있게(3년 착용가능하도록) - 사이바 라인 겉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야함 여분단추 필수
후드 집업		<p>1.색상 진감색</p> <p>2.혼용율 면 50% 폴리 5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감색 후드 집업 -면 후드끈 손목/밑단 진감색 밴드 폼/소매 넉넉하게 겉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야함
바지		<p>1. 원단 색상:회색</p> <p>2.혼용율 모 60% 폴리 40%</p> <p>3.젠트라 스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 -노턱, 바지통 7.5~8.0인치 허리조절기 길이 -복사뼈 아래(단분시접 5cm이상) 뒤주머니 2개

		<p>4. 안감 폴리 100%</p>	<p>5. 겉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야 함</p>
<p>니트 조끼</p>		<p>1. 색상 베이지바탕 목, 밑단, 소매 밤색 배색 2. 혼용물 모 50% 아크릴 50%</p>	<p>1. 브이넥 2. 목부분, 소매부분 몸판 쪽으로 0.6cm 폭 밤색 배색 3. 밑단 끝부분 0.8cm 밤색 배색 4. 앞판만 파베기 뜨임 5. 겉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야 함</p>
<p>생활 복 바지</p>		<p>1. 색상 -진감색 -흰색 배색 2. 혼용물 울 50% 폴리 50%</p>	<p>1. 디자인 -노턱, 바지통 7.0~8.0인치 2. 허리끈(고무밴드) 3. 배색 - 흰색 3줄 배색 - 배색간격 0.5cm</p>

복종	그림(전, 후면)	제원	특징(제작요령)
<p>상의 (자켓)</p>		<p>1. 겉감 - 자주색 캐시미어 - 모: 나일론=80:20 - 베이지배색 2. 안감 폴리 100% 3. 교표 - 미정</p>	<p>1. 단추(검정단추) - 앞단추 3개(지름 18mm) - 소매단추 2개(지름 15mm) 2. 가슴주머니 5cm 아래 교표 3. 가슴주머니 위 베이지 배색 4. 아래 주머니 뚜껑 있음 5. 길이는 허리선 아래 5cm 이상 겹치도록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소매시접 4cm 이상 7. 길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야 함 8. 여분단추 1개 이상 필수
블라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단 색상 - 흰색 2. 혼용율 폴리 70% 레이온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추 - 앞단추 : 백색 7개(12mm) - 소매단추 : 백색 2개(12mm) 2. 품 - 여유있게(3년 착용가능하도록) - 사이바 라인 3. 길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야 함 4. 여분단추 필수
후드 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색상 진감색 2. 혼용율 면 50% 폴리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감색 후드 집업 -면 후드끈 2. 손목/밑단 진감색 밴드 3. 품/소매 넉넉하게 4. 길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야 함
스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단 색상 :빨강/베이지 체크 2. 혼용율 모 60% 폴리 40% 3. 센터라 스팩 4. 안감 폴리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자인 - 혼솔지퍼, 앞뒤 맞주름 2. 길이 - 사이즈별 규정 준수 3. 길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야 함

복종	그림(전, 후면)	제원	특징(제작요령)
생활복		<p>1. 색상 -감색 -배색: 하늘색선염</p> <p>2. 혼용율 -폴리 100% -쿨맥스 원단</p>	<p>1. 디자인 -카라결 1cm 선염배색(바이어스) -앞단 결 배색 -어깨선/소매/등판 띠 배색 -주머니 위 1.5cm폭 체크배색 -밀트임 안쪽체크배색(바이어스) -주머니 중앙 교표 위치</p> <p>2. 3년간 입을 수 있도록 넉넉히</p> <p>3. 겉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야 함</p>
생활복바지		<p>1. 원단 색상:검정색</p> <p>2. 혼용율 폴리 100%</p> <p>3. 기능성메모리</p>	<p>1. 디자인 -노턱 -바지통 9~9.5인치</p> <p>2. 길이 - 무릎선 아래 2~3cm 길이</p> <p>3. 양쪽 주머니 지퍼</p>

4. 복장의 부착물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5. 체육활동 및 실기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6.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게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단, 크룩스, 물 종류 신발은 금지한다.)
7.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단, 클러치 종류의 가방은 금지한다. 허용하는 가방의 종류는 A4사이즈 책이 들어갈 수 있는 가방으로 제한한다.)
8. 학생의 두발은 자율화를 원칙으로 해 단정히 하되, 염색은 지나치게 밝거나 튀는 색상(빨강, 노랑, 보라, 초록 등)은 금지한다.
9.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10. 입학 전부터 있던 타투는 최대한 가리며, 다른 학생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11. 복장은 장소와 행사에 맞춰 입는다.
12. 학교의 교실에서 교복을, 실습장에서는 실습복을 입고, 운동 중에는 체육복을 용도에 맞게 입는다.
13. 동복과 하복은 함께 입을 수 있다.
14. 정복 착용이 원칙이며 속에 입은 옷이 드러나지 않도록 착용한다.
15. 외투는 정복 착용 상태에서 입는다. (단, 마이는 제외한다. 외투의 색과 종류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교복을 철저히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복을 제대로 입지

않고 외투를 입는 경우는 적발한다.)

16. 하복 상의 위에 후리스를 허용한다. (하복이 가려지는 옷은 안되며 어두운 색상이어야 한다.)
17. 실습 중에는 반드시 실습복과 양말, 실습화를 착용한다.
18. 실습 후 실습장 내에서 휴식을 취할 때에는 실습복 탈의를 허용한다.
19. 실습이 있는 날 교실에서는 실습복 상의나 하의를 반드시 착용한다. (실습이 있는 날이 어도 무조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 등교 시 교복이 작거나 없는 학생의 하의는 검정색·네이비색 슬랙스 바지까지는 허용하되, 조거팬츠 종류의 바지는 금지한다.
21. 넥타이를 잃어버렸거나 없는 학생은 일반 검정색·네이비·빨간색 계열의 넥타이까지 허용한다.
22. 펌의 경우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3. 하복바지를 입을 때 체육복 반바지를 입는 것을 허용하며 단, 로고가 손바닥보다 작은 경우일 경우에만 가능. 또한 하복 상의가 없을 경우 동복(흰색 와이셔츠+넥타이)을 입거나 학교 체육복을 입는 것을 허용(단, 원칙은 하복을 입는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 같은 규정 적용)
24. 사복테이를 실시할 때 복장은 최대한 단정한 선에서 입는다. 반바지의 경우 길이가 허벅지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옆·뒤·앞이 트이지 않는 옷, 목부분의 쇄골이 보이지 않는 옷을 입어야 한다, 또한 민소매와 같은 옷은 금지한다.

제14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 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승차를 금한다.
8.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 복용을 금한다.
9.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15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16조(정보통신 윤리)

1.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2.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3.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거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4.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5.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나.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라.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마.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사.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아.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 자. 학교나 본교 학생의 사진 및 동영상을 이용한 허위 사실이나 잘못된 정보로 학교의 명예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행위는 징계기준 및 벌점을 적용한다.
 - 차. 불법촬영(몰래카메라, 상대 미 동의하 촬영, 이성을 상대로 하는 불법 촬영 등)을 하지 않고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한다.
 - 카. 부당한 영상물(사진 및 동영상), 음성은 유포(게시 및 전송)하지 않는다.

제17조(전자기기 사용)

1.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교육활동 방해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지도교사는 1주일 이내로 해당학생의 통신기기 등을 보관 할 수 있다
3.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4.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5.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8조(자치활동)

1.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2.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3.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5.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6.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19조(기타)

1.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2.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3.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4.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5. 부모님 혹은 선생님 차량을 타고 등교 시 학생은 교문 밖에서 내린 뒤 출입해야 한다.
6. 교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등교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학생자치법정에 회부 및 징계를 받는다.

제 3 장 학생생활선도위원회

제20조(생활선도위원회)

1.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선도위원회(이하 '생활선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생활선도위원회는 교감, 각 부장교사(4명), 생활교육 담당교사, 상담교사(상담업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선도위원회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3. 생활선도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인성인권안전부 업무담당교사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1조(생활선도위원회 회의 소집 및 기능)

1. 생활선도위원회는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인성인권안전부 업무담당교사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2. 생활선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2조(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23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6. 훈계, 훈육으로도 개선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는 교육공동체가 합의하고 사회 통념상 용인할 만한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

제24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교생활선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7.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5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1.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2.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나.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다.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라. 적절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마.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바.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마.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3.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생활선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소지품 검사)

1.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4.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5. 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6.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7.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제12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나. 제12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다. 제12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27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1.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2. 제17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8조(징계의 원칙)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3.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5.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6. 제 13조의 사안들을 위반했을 경우 학생자치회의 생활 지도에 따른다.

가. 3회 위반 시 담임교사에 통보

나. 5회 이상 위반 시 학생자치법정(회장, 부회장, 각 부서 부장 구성)에서 봉사 수위 결정
다. 나 항목의 학생자치법정에서 결정된 사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시 학생생활선도위원회 회부

7. 무단 조퇴 3회를 무단 결석 1회, 무단 지각 3회를 무단 결석 1회로 간주하며, 추가적인 무단 결석이 있을 시 <별지 1>의 생활교육 기준에 따라 징계를 내린다. (위 내용은 생활 기록부 기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 10~8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1일 최대 8시간은 초과하지 않는다.)
2. 사회봉사 : 10~8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1일 최대 8시간은 초과하지 않는다.)
3. 특별교육이수 :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20일 이내, 연간 5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퇴학처분 :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6.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0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감독이 어려운 경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1. 학교생활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2.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3.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2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1.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2. 각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3. 각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3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1.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가.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나. 피청구인
 - 다.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라.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34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1.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2.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3.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4. 징계 대상 학생이 외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선행상 또는 봉사상을 받았을

경우에도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징계를 1단계 경감할 수 있다.

제35조(사후 조치)

1.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2.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와 동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 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의 기준)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각 학교에서 전북 학생인권 조례 1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학교폭력

제37조: 학교폭력발생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 시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금)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p>※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p>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p>※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p>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 시
		<p>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연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돈을 건어오라고 하기 등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게하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됨
따돌림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 시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제6장 현 장 실 습

제38조 (현장실습 준수사항)

1. 기업체나 행정관서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한 때에는 사규나 관서의 규칙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가 기업체(관서)의 복무규정을 엄수한다.
 - 나 현장실습의 장을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여기고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 학생의 본분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다 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학교의 허가 없이 타 기업체로 이동하지 못하며 실습일지 및 근무상황 보고서를 학교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 라 공납금은 징수규정에 의하여 납입기일 내에 납입한다.
 - 마 현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바 각종 자격시험 등을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체의 장에게 허가를 얻어 참여한다.
 - 사. 현장실습 기간 중 출근은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2. 실습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정도에 따라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에 처한다.

구분	항	내 용	징 계
근태	1	위장 취업자	학교내의 봉사 또는 사회 봉사
	2	개인적인 사고로 인하여 실습업체 및 학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자	
	3	징계처리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고 다시 징계규정을 위반한 자	
	4	실습업체 책임자 및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이탈한 자	학교내의 봉사
	5	근무 부실로 실습업체로부터 퇴사를 당한 자	
	6	실습업체의 사규를 위반하여 실습업체에 현저한 손실을 입힌 자	
	7	실습업체 무단변경자	
	8	학교장의 귀교승인을 받고 귀교하여야할 자 중 귀교 승인을 받은 날짜로부터 4일 이내에 귀교하지 않은 자	

【학부모 협조사항】

자녀의 현장학습 기간 중 이상한 점이 인지될 경우 반드시 학교에 통보, 함께 협의한다.

제7장 학생회

제39조 학생회

1.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2. **【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4. **【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학생 연구활동
 - 나.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 다.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라. 각종 행사활동
 - 마.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5.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6. 【학생회 임원, 임기】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나. 각 부장 1인씩 총 4인, 각 부 차장 1인씩 총 3인

다. 각반 실장

라. 회장·부회장 및 각 부장·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학기부터 1학기까지로 한다.

(단, 2023학년도 3월부터 시작하는 회장·부회장 및 각 부장·차장의 임기는 1학기로 마무리하며 위 규정은 2023학년도 하반기부터 1년씩 하는 것으로 규정함)

7.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서와 부원을 둘 수 있다.

가. 행사봉사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기,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 학·예술 활동 행사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학교 내의 봉사활동 및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나. 생활지도부

- 학교 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 생활지도부의 부장은 남학우 1인, 여학우 1인. 합 2인으로 구성함.
- 생활지도부의 차장은 남학우 1인, 여학우 1인. 합 2인으로 구성함.

다. 소통/홍보부

- 학교 홍보와 관련한 사항
- 학교 SNS 관리

8. 【직무 및 선출】

1.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라.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마. 각반 실장은 학급회의 안건을 학생회에 상정할 수 있다.

바. 학교 내의 봉사 정도의 징계를 결정 할 수 있다.

사. 학생대표(임원)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나. 회장 및 부회장은 런닝메이트제이며 본교 회장, 부회장 각각 교사3명, 학생15명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입후보 자격이 있다.

- 교원 개입 금지 : 선거 운동 기간 중.

- 선거 운동 기간: 투표일 1주일 전 08:30부터 투표일 전날 16:30까지.

다. 각부 부장 및 차장, 부원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회장이 추천한다.

9. 【회의】

1.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2.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인성인권안전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4. 가벼운 학생사안 발생 시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할 수 있다.
 - 학생자치법정(학생회 임원-회장, 부회장, 각 부장)에서 생활규정 및 전북유니텍고등학교 공동체 생활 협약을 위반한 학생에게 부과: 학교 내의 봉사 5일 이내
 - 학생회 임원(회장, 부회장, 각 부장4인)1/2이상 제청 시 학생자치법정 운영
 - 운영시기: 사안 발생 시
 - 징계의 결정: 학생회 임원 1/2이상 찬성 시 징계 가결(협의록 작성)
 - 시행 및 감독: 학생회 회장 및 생활지도부장, 인성인권안전부장

제8장 규정의 개정

제40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은 4인, 학부모대표 1인, 학생대표 5인(회장, 부회장, 학년 대표 3인)으로 구성한다. (단, 학생 대표가 위원회 구성원의 40%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학부모 대표는 1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개정안의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가. 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라.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마.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

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3조(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4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선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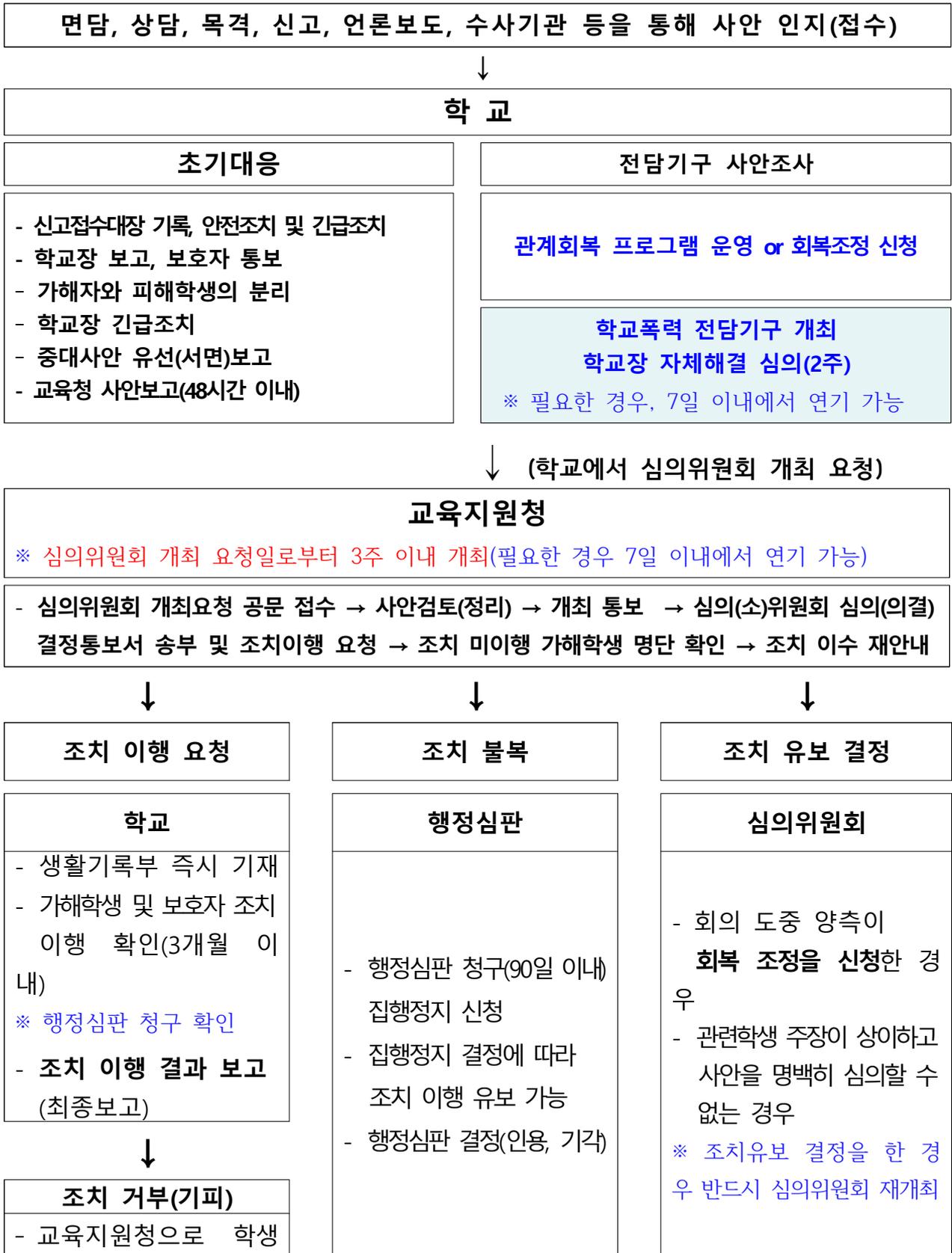
제9조 학생이 징계를 불이행 시 학교생활선도위원회에 재회부하고 상위 단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또한 특별교육의 경우 결석3회(지각, 조퇴, 결과 각 3회는 결석1회에 해당)초과 시 학교생활선도위원회에 재회부하고 상위 단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별지 1> 생활교육 기준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 계				
			학교내 의봉사	사 회 봉 사	특별교 육이수	출석 정지	퇴 처 학 분
예절	1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	●	●	●
	2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3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4	공공 문서를 위조·변조 또는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5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6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	●			
준법	7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8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9	경찰기관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	
	10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11	교내·외에서 절도를 하여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1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13	형법상 유죄(금고형 이상)로 판결된 학생				●	●
수업	14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15	수업 중 담당교사의 허락없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	●	●			
	16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17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		
	18	백지동맹을 주동·선동하거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19	시험문제지를 절취하거나 문제를 누설한 학생			●	●	●
근태	20	학급동료들과 집단으로 짝을 이루어 무단 조퇴함이 판명된 자	●	●	●		
	21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회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				
	22	정당한 사유 없이 월 5회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			
	23	정당한 사유 없이 월 7회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		
	24	정당한 사유 없이 월 10일 이상 무단결석이거나 동학기 중 누계 20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	●
	25	동학기 중 무단결석 기간이 수업일수 30일을 초과한 학생					●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 계				
			학교내 의봉사	사 회 봉 사	특별교 육이수	출석 정지	퇴 처 학분
약물	27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28	음주를 한 학생	●	●	●		
퇴폐 행위	29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	●	●
	30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31	통신매체등을 포함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 및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32	신체부위에 문신 및 타투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신체 훼손 및 변형 행위	●	●	●		
	33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	●	●	●	
금품	34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	●		
	35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겜 등)을 판매 또는 강매한 학생		●	●	●	●
	36	금품을 사취, 강탈한 학생		●	●	●	●
교통 법규	37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형사처벌(금고형 이상)을 받은 학생				●	●
	38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등하교시 자동차로 운전을 하는 학생 및 차량(2륜 차량)을 운전하거나 2륜 차량에 동승한 학생, 단 생계형은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동의서가 있는 경우 허가.	●	●	●		
집단	39	불법 집회 또는 불량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40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위반한 학생		●	●	●	●
	41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42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기타		재학 중 학생생활선도위원회에 3회이상 회부되는 학생				●	●
	43	* 징계기준 외의 것은 생활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학교폭력에 관한 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진행된다.					

<별지 2 > 학교폭력발생 사안 처리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